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63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김기표 · 오세희 · 이훈기  
이주희 · 한민수 · 장경태  
박수현 · 노종면 · 문진석  
권철승 · 김 윤 · 송재봉  
김남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라.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마.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사건 절차의 관계인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

자.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p> <p>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u>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p> <p>① -----</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p> <p>가. <u>국가</u></p> <p>나. <u>지방자치단체</u></p> <p>다. <u>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u></p> <p>라. <u>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u></p> <p>마. <u>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u></p> <p>바. 「<u>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회생·파산사건 절차의 관계인</p> <p>사.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② ~ ⑤ (생 략)</p>	<p><u>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u></p> <p><u>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u></p> <p><u>자. 「변호사법」에 따른 법 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 는 법무조합</u></p> <p><u>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 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자</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